

# 여러분은 재해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FEMA, 각 주, 미국령 혹은 부족 정부가 미국시민, 미국적이거나 미국시민이 아닌 자, 유자격 외국인들에게 직접지원 및 재해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해지원은 보험이나 기타 방법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임시월세금보조, 주택수리, 개인재산물 손실 그리고 기타 심각한 재해관련 필수사항 또는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미국의 50개주 중의 한 주, 워싱턴 디시,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제도 또는 북부 마리아나제도에서 태어난 자; 미국밖에서 태어났으나 부모중의 최소한 1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귀화인

미국적자이나 미국시민이 아닌자-미국소유가 된 날이나 이후에미국소유변방지역(예, 미국령 사모아 또는 스와인스(Swain's 섬)에서 태어난 자, 또는 그의 양쪽 부모가 미국적자이나 미국 시민이 아닌 자. 모든 미국시민은 미국적자이나 모든 미국적자가 반드시 미국시민은 아닙니다.

유자격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

- 합법적인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유자)
- 망명자, 난민, 또는 추방 신분이 계류중인 자
- 미국에서 최소 1년 이상 가석방 외국인
- 조건부 입국자격이 부여된 외국인(1980. 4.1 이전 법률 발효에 의거)
- 쿠바/하이티국적 입국자
- 극도의 잔학행위를 당한 특정 외국인 또는 T비자 혹은 U비자 소유자를 포함 가혹한 인신매매 피해자



신청당시 신청인이 시민권이나 이민자격에 해당되지 않아도, 다음 조건으로 해당 가구는 특정한 형태의 IHP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아동을 포함, 가구중 다른 사람이 신청등록기간 중 해당 유자격일 경우
- 동일가구 거주 미성년 아동의 부모나 가디언이 해당 아동을 위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나 이 아동은 미국시민, 미국적자나 미국시민이 아닌 자 혹은 유자격 외국인. 이 아동은 재해발생 첫날이나 재해선포일 기준 먼저 오는 날에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각 개인은 FEMA재해지원을 위한 이민자격 요건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민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